2024학년도 수원외고 1단계 **사회통합전형** 원서접수 및 유의사항 홈페이지 안내

<table>
<tr><th>접수 절차</th><th>1단계 접수 안내 (12월 8일 (금) 09:00 ~ 12월 14일(목) 17:00)
- 12.9.(토), 10.(일) 서류 접수 기간 제외</th><th>유의 사항</th></tr>
<tr><td>온라인
원서 접수</td><td>
1. 인터넷 원서 접수
① 수원외고 홈페이지(http://www.sawl.hs.kr)접속하여 인트로 페이지 중
“1단계 원서 접수” 배너를 클릭(수원외고 회원가입 하지 않음)
또는, 접수대행사 ‘유웨이(http://www.uwayapply.com)’에 접속하여 중·고등학교 탭에서 수원외국어고등학교를 선택
② ‘유웨이’ 회원 가입한 후 로그인 → 페이지 내용 확인 후 ‘원서 작성’ (클릭)
③ 모집구분, 전형 구분, 지원학과를 정확하게 입력
※ 사회통합전형의 경우 : 사회통합전형 해당 순위 표시 → 하위 해당 내용 표시 (2,3 순위의 경우, 가구원 수 표시)
④ 지원자 관련 사항을 정확히 빠짐없이 입력
※ 원서용 사진 파일은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3x4) 증명사진을 jpg파일로 업로드 (교복 또는 사복 착용 모두 가능)
⑤ 학적 관련 사항
1) 내신성적 일부가 없는 경우, 반드시 ‘내신성적 미비자’에 표시
※ (1학년 제외) 자유학기제로 내신성적이 없는 경우, 이수 여부와 해당 학기 표시
2) 영어, 국어, 사회 성적을 학교생활기록부 성취도와 동일하게 입력함.
※ 사회 성취도가 없는 경우만, 역사 성취도를 입력함.
※ 내신성적이 없는 학기는 ‘성적 없음’을 선택함.
※ 검정고시 합격자는 ‘성적증명서’에 나와 있는 6과목의 성적을 입력하고, 성적증명서에 나온 6과목의 평균을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모두 입력함
⑥ 출결관련사항
1~3학년의 미인정 출결 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내용과 동일하게 입력함
⑦ 저장 (클릭) 후 입력 내용을 꼼꼼하게 살피고 이상이 없으면 ‘결제하기’ (클릭)
※ 결제 후 ‘수정 불가’ : 결제 전 신중히 검토
⑧ 결제하기 : 안내된 결제 방법을 선택하여 결제
1단계 전형료 5,000원 및 접수대행사 수수료 3,000원 결제
(기초생활수급자, 국가보훈대상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의 자녀 전형료 5,000원 면제, 수수료만 결제)
※ 인터넷 접수대행사에서 전형료 및 수수료를 결제해야 접수가 완료됨
2. 원서접수 홈페이지에서 제출 서류 출력
인터넷 접수 완료 후
① 2024학년도 수원외국어 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원서
② 수험표
③ 개인 정보 활용 동의서
④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학교장 및 학부모 확인서
⑤ 제출 서류 봉투 겉표지
</td><td>
※ 온라인 접수는 마감 시간 전, 24시간 가능

※ <u>전형료 및 접수 수수료가 결제되어야 접수가 완료됨</u>

※ <u>결제 완료 후 전형 및 지망학과 등 모든 부분 수정 불가, 온라인 결제 후부터 지원자로 간주됨</u>
</td></tr>
<tr><td>제출서류
준비</td><td>
1. 입학원서(인터넷 접수 후 출력물) 1부
① 온라인 접수 완료 후 입학원서를 출력하여 지원자와 보호자의 서명(날인)
② 담임교사의 성적 확인 서명(날인) 후 굵은 검은색 테두리 부분 <u>투명테이프 부착</u>
<table>
<tr><td>출결(1~3학년)</td><td colspan="4">무단(미인정)결석( )회, 무단(미인정)지각,조퇴,결과( )회</td></tr>
<tr><td rowspan="2">구분</td><td colspan="2">2 학 년 성 취 도 수 준</td><td colspan="2">3 학 년 성 취 도 수 준</td></tr>
<tr><td>1학기</td><td>2학기</td><td>1학기</td><td>2학기</td></tr>
<tr><td>영어</td><td></td><td></td><td></td><td></td></tr>
<tr><td>국어</td><td></td><td></td><td></td><td></td></tr>
<tr><td>사회(또는 역사)</td><td></td><td></td><td></td><td></td></tr>
<tr><td colspan="2">자유학기제 해당 학기
※ 성적산출이 안 된 2,3학년의 학기만 기재</td><td colspan="2">( )학년 ( )학기</td><td colspan="2">( )학년 ( )학기</td></tr>
<tr><td>담임교사
성적확인</td><td colspan="4">( )학년 ( )반 담임교사 ( ) (인)</td></tr>
</table>
</td><td>
※입학원서(원본) 및 제출서류 매 페이지 <u>하단 중앙</u>에 수험번호를 수기로 기입
(성명은 기입금지)
(학교생활기록부 사본은 제외)
</td></tr>
</table>

③ 중학교장 직인 3개(원서사진, 원서 하단 학교장, 수험표사진) 확인

※ 단, 검정고시 합격자는 중학교장 직인과 담임교사 날인 생략

2. 개인정보활용동의서(인터넷 접수 후 출력물) 1부

온라인 접수 완료 후 출력하여 지원자와 보호자의 서명(날인)

3. 학교생활기록부Ⅱ 1부

① 중학교에서 상급학교제출 - 외국•국제고 입시용으로 출력 발급

② **'출결 특기사항'에 출결 마감 (마감 날짜 : 2023.11.30. 마감) 기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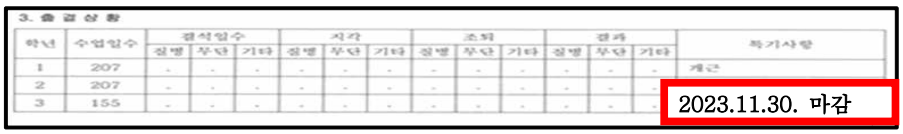

③ **외고·국제고 입시용 선택 단면 출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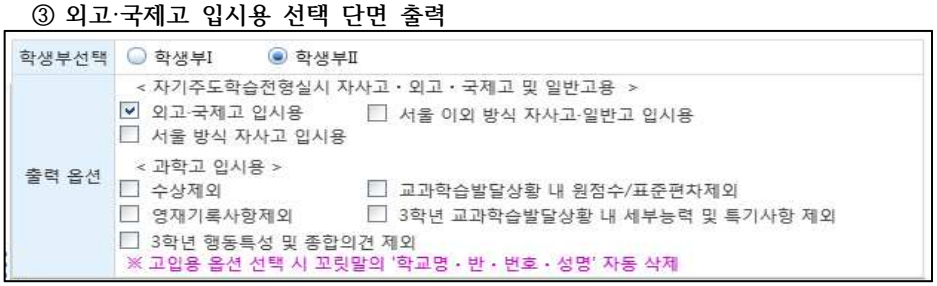

④ 학교생활기록부 원본 1부는 중학교장 직인 및 간인 필수

※ 사본 3부: 날인 안 함 (4부 한꺼번에 출력 후 원본 1부에만 직인 및 간인)

※ 검정고시 합격생은 '성적증명서' 사본을 제출한다. (원본 제시)

※ **서류봉투 겉표지**를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 후 서류 대봉투에 모든 제출서류를 **순서대로** 넣고 제출서류 항목을 체크하여 제출

4. (양식)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학부모 및 학교장 확인서 1부

① 온라인 접수 후 서류 출력

② 중학교장 직인, 지원자와 보호자의 서명(날인)

5.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1부

6. 사회통합전형 대상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각종 서류

서류 제출

1. 서류 제출 기간 : 2023.12.8.(금) ~ 12.14.(목) (12.9.(토), 10.(일) 제외)
09:00~17:00 (중식 시간 12:00~13:00 제외)

2. 서류 제출 장소 : 수원외고 지하 1층 원서 접수처에 제출 (우편접수 불가)

① 본교 신입학 '**사회통합전형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목록**'을 반드시 확인

※ **서류봉투 겉표지**를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 후 서류 봉투에 모든 제출서류를 **순서대로** 넣고 제출서류 항목을 체크하여 제출

② 서류나 자격기준이 복잡하여 대면 확인 및 질의가 필요함

③ 최소 **접수 마지막 날(14일) 오전까지 제출 요망.**

예년에 마지막 날 서류 미비와 오류로 접수가 안 된 사례가 있음에 유의.

3. 수원외고 원서 접수처에 신입학 원서 및 전형별 해당 서류를 접수해야 최종 완료

- **1단계 원서 접수에서 온라인으로 원서를 작성하고 결제하면 지원한 것으로 간주됨(이중 지원에 유의), 1단계 서류 출력물 미제출 시 서류 미비로 불합격 처리됨을 유의**

※ 수원외고 '**1단계 원서 접수**' 사이트에 접속하여 '**1단계 원서 제출서류 도착**' 여부 확인 가능함

※ 1단계 합격자 발표와 동시에 2단계 접수가 시작되므로 자기소개서 등 2단계 제출 서류를 미리 준비.

※ 2단계원서접수 (온라인)

12월 19일(화) 09:00 ~ 12월 20일(수) 17:00

※ 학교생활기록부Ⅱ의 출결특기사항에 **'2023.11.30. 마감'이 반드시 기록**되어야 함.
※ 검정고시합격자는 합격증과 '**성적증명서**' 사본을 반드시 제출함.
※ 증빙서류 사본을 제출할 때에는 반드시 원본을 지참 제시하여야 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된 서류의 제반 기록 사항 중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함.
※ 지원자는 모든 제출서류(인터넷 업로드 포함)에 대한 미도착(미접수), 서류미비, 착오, 누락, 오기, 기재 오류, 전형료 미납부 등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을 책임진다.

2024학년도 수원외국어고등학교
신입생 자기주도학습전형 [사회통합전형] 안내 자료

Ⅰ. 모집 정원 및 모집 학과 : 공학 남.여 200명 (8학급, 학급당 학생 수 25명)

전형구분 \ 학과(학급수)		영어과 (3)	러시아어과 (1)	일본어과 (1)	프랑스어과 (1)	중국어과 (2)	합 계 (8)
정원내	사회통합	15	5	5	5	10	40
	계	**75**	**25**	**25**	**25**	**50**	**200**

※ 학과별 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2지망 없음.

Ⅱ. 지원 자격

1. 공통사항 : 지원자는 다음 각 호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가. 경기도 소재 중학교 졸업예정자
나. 중학교 졸업자로서 경기도에 거주하는 자
다.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로서 경기도에 거주하는 자
라.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로서 경기도에 거주하는 자
마. 타 시·도 소재 특성화중학교(전국단위모집 자율학교 포함) 졸업예정자 중 경기도에 거주하는 자
바. 외국어고등학교가 소재하지 않는 타 시·도의 중학교 졸업예정자(2024학년도 3월 외국어고 신입생 모집이 없는 타 시·도 지역)

※ 위 '나~마'항의**'경기도에 거주하는 자'라 함은'원서 접수일 현재 전 가족(보호자 포함)이 경기도에 단독세대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자'를 의미한다.**

2. 사회통합전형 지원 자격

가. 전형별 지원 자격 (개요)

전형 구분		인원	지원 자격
정원내	사회통합 전형 대상자	40	사회통합 전형 대상자 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원 자격의 공통사항 각 호에 해당하고 고등학교 입학 사실이 없는 자

나. 사회통합전형 세부 자격 기준

전형 구분		인원	지원 자격
정원내	사회통합	40	가.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원 자격의 공통사항 각 호에 해당하고 고등학교 입학 사실이 없는 자로 한다. 나.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범위 **1) 1순위 (기회균등 대상자)** ①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구,차상위계층)로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교육급여수급자] ③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④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자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의한 복지급여수급권자) ⑤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구,차차상위계층)로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교육비지원 대상자] ⑥ 학교장 추천 학생 ※ ①,②,⑤ 항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학교장이 판단・추천한 자 ※ '학교장추천위원회'구성(학교장, 교원,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지역 위원 중 7~9명).심의.검증 후 학교장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추천한 학생에 한함. (학교장추천위원회 회의록 사본과 객관적 증빙서류 첨부) **- 객관적 증빙서류 예시** 실직급여수급증 사본, 채권압류통지서, 법원 파산결정문 사본, 폐업확인서, 지역건강보험료 영수증, 급여명세서, 재산세납입증명서 등 **2) 2순위 (사회다양성 대상자)** ① 소년.소녀가장(형제.자매 포함) ② 조손가정 학생 ③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해당자) ④ 순직군경 자녀, 순직소방대원 자녀, 순직교원 자녀 ⑤ 다문화가정 자녀(「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 해당자) ⑥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아동복지법」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에 보호된 아동) **3) 3순위 (사회다양성 대상자)** ① 농어촌의 면단위 소재지 중학교의 3개 학년의 전과정(1학년 3월 입학일부터 원서접수일 현재까지)을 이수중인 졸업예정자 (단, 학생의 지원에 의해 선발하는 중학교는 제외) ②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자녀(첫째 자녀부터 가능) ③ 준사관/부사관 자녀 ④ 도서벽지 중학교 졸업예정자 (2023년 2월 28일 이전부터 원서접수일 현재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 ⑤ 산업재해근로자 자녀 ⑥ 한부모 자녀(「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 제1호~5호 해당자)

※ **2순위와 3순위의 경우 소득분위 8분위(기준중위소득 160%) 이하에 준하는 가정의 자녀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가구원 수에 따른 월 소득 환산액에 대한 건강보험료 납입금' 기준

[2023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기준중위소득 160%]

(단위: 원)

가구원 수*	소득기준(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5,530,000	197,299	157,523	200,343
3인	7,096,000	255,791	229,312	261,015
4인	8,642,000	309,670	293,801	320,126
5인	10,130,000	359,887	354,030	379,133
6인	11,565,000	434,962	436,179	476,875
7인	12,973,000	476,875	481,248	521,613
8인	14,380,000	521,613	527,523	563,270
9인	15,787,000	563,270	570,140	625,329
10인	17,194,000	625,329	628,210	729,187

- 2023년 2월~11월의 10개월 납부액의 평균액을 산정
- 혼합 : 부 또는 모 중 1인은 직장가입자, 다른 1인은 지역가입자의 경우
-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학생과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부·모** 및 2촌 이내의 **형제·자매**
  (부모가 모두 없는 경우에 한해 조부·모 포함, 조부.모 없는 경우 외조부.모 포함)

Ⅲ. 전형 방법

전형 구분	총점	전형요소 및 전형 방법
사회통합전형	1단계 (160점)	1) 모든 전형 공통사항을 적용한다. 2) 사회통합전형 대상자의 **우선 순위를 적용**하여 1단계 전형요소 총점 순으로 고득점자를 학과별 모집정원의 **1.5배수** 선발 가. 1순위 지원자를 사회통합 전형 모집인원의 1.5배수 이내에서 우선 선발한다. 나. 1순위 지원자를 선발한 후 부족한 인원은 사회통합 전형 모집인원의 1.5배수 이내에서 2순위 대상자를 우선 선발하고 미달 시 3순위를 선발한다. 다. 우선순위 모집으로 인해 지원 기회를 잃은 후 순위 지원자는 일반전형 동일학과로 전환하여 전형한다.
	2단계 (200점)	1) 전형요소를 합산한 총점(200점 만점) 순으로 고득점자를 학과별 모집정원 만큼 선발하되 아래 방식을 적용한다. 가. 1순위 지원자로 사회통합 전형 모집인원의 60%를 의무적으로 우선 선발한다. 나. 1순위 합격인원을 제외하고 남은 모집인원은 1순위 탈락자, 2·3순위 대상자를 포함하여 순위에 관계없이 통합 선발한다.
	비고	※ 같은 순위 내의 대상자 간에는 우선순위를 적용하지 않는다. ※ 추가모집 시에도 위 전형 방법을 적용한다.

Ⅳ. 제출 서류

구 분	제출 서류
	1단계
사회통합	1) 입학원서(인터넷 접수 후 출력물) 1부 2) 학교생활기록부Ⅱ 4부 (원본1부+사본3부) 3) 학부모 및 학교장 확인서 1부 4)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1부 5) 사회통합 대상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각종 확인서 6) 사회통합 대상자의 1순위 ⑥ 학교장 추천 학생은 학교장추천위원회 회의록 사본, 객관적 증빙서류를 첨부 ※ 객관적 증빙 서류 예시 : 실직급여수급증 사본, 채권압류통지서, 법원파산결정문사본, 폐업확인서, 지역건강보험료 영수증, 급여명세서, 재산세 납입증명서 등 7)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부 8) 기타 자세한 제출 서류 안내는 '부록' 참고

※ '외고, 국제고 입시용' 탭을 선택하여 다음 사항이 반영되도록 출력
① 출력 제외 항목 : [수상경력(3번)], [3학년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8번)], [교과학습발달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② 일부 출력 항목 : 교과학습발달상황(5번)의 영어, 국어, 사회(또는 역사) 과목의 원점수, 과목평균(표준편차)를 제외하고 성취도(수강자수) 만 출력
- 이상의 내용을 단면 출력하여 학교장 직인과 간인 후 제출 (원본)
- **출결특기사항에 '2023.11.30. 마감' 기록**

※ 주민등록등본은 원서접수일 기준 (2023.12.8.) 최근 7일 이내의 것으로 한다. (부 또는 모 기준)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 제출된 서류의 제반 기록 사항 중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한다.

양식	사회통합전형 _ 학부모 및 학교장확인서

※ 본 양식은 견본이며 온라인 접수 후 출력, 출신 중학교에서 내용 확인 및 학교장 직인 날인 후 제출

2024학년도 자기주도학습전형 (사회통합) 부정입학 방지를 위한

학부모 및 학교장 확인서

발급번호	2023 -

접수번호		성명	학생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작성)	- *******
			학부모			- *******
출신 학교	( ) 중학교 ( )년 월 (졸업 / 졸업예정)					
사회통합전형 지원 유형	1순위	유형 ( )				
	2순위	유형 ( ), 가구원 수 ( )				
	3순위	유형 ( ), 가구원 수 ( )				

본인은 2024학년도 사회통합전형의 ( )순위 ( )유형 지원자격에 적합하게 지원하였음을 서약하며, 지원자격을 준수하지 않거나 지원자격이 없음에도 증명서 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 및 입학이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수원외국어고등학교장 귀하

2023년 월 일

확인자 : 학 생 _____ (인)/서명

학부모 _____ (인)/서명

( ) 중 학 교 장 (직인)

※ 발급 번호 : 중학교별로 확인서를 발급한 연번호 기록 (발급대장 별도)

※ 접수 번호 : 사회통합 전형 접수 번호 기록 (수원외국어고등학교에서 기록)

※ 검정고시 합격자의 경우, '출신학교' 란에 '검정고시' 표기

※ 지원 유형

- 1순위 : ( ) 안에 유형* 기입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기준 중위소득 50(또는 60)%이하 가구, 국가보훈대상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학교장 추천자

- 2,3순위 : ( ) 안에 유형 및 가구원 수*를 기입

*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학생과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부·모 및 2촌 이내의 형제·자매 (부모가 모두 없는 경우에 한해 조부·모 포함, 조부·모 없는 경우 외조부·모 포함)

부록 1

사회통합전형 지원 자격 및 소득 확인 방안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3항 1~4호 및 특수목적고 지정 및 운영등에 관한 규칙 제17조

	대상		제출서류	전형구분
1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1호의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 수급자 증명서	기회균등
2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서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 법정차상위계층 ※ 주민센터에 등록된 가구 - 자활근로자 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장애인연금·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차상위부가급여 또는 차상위 해당자) 등 ○ **교육급여수급자증명서**	기회균등
3호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 제2호의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 국가보훈대상자 확인원	기회균등
4호	그밖에 교육기회의 균등을 위하여 교육감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	기회균등
		차차상위계층으로서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 **교육비지원확인서**	기회균등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한 자	○ 기회균등자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기타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학교장이 판단.추천한 자	기회균등
		다문화가정의 자녀	○ **소득분위 8분위(기준중위소득 160%) 이하 가정의 자녀에 한함. 가구원 수에 따른 월 소득 환산액에 대한 건강 보험료 납입금 기준**	사회다양성
		북한이탈 주민		
		아동복지시설보호 아동		
		도서벽지 출신		
		한부모가정의 자녀		

부록 2 **2순위, 3순위 지원 자격 적용 기준(소득분위 8분위 이하)**

· 2순위, 3순위 지원 자격(소득분위 8분위 이하) 적용 기준

❍ **소득분위 8분위(기준중위소득 160%) 이하 증명**

- **건강보험료(최근 10개월 평균액) 기준을 적용**
- **건강보험료 확인 시, 부.모 모두 확인**(단,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가정'은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를 같이하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이하 확인서) 상 지원학생이 피부양자 등으로 등록되어 있는 부 또는 모의 자료를 확인, 거주와 확인서 피부양자 등록 요건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 확인서에 지원학생이 피부양자 등으로 등록된 부 또는 모의 자료 확인)

· 2023 소득 8분위 건강보험료 적용 기준표

※ 「2023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기준중위소득 160%」

(단위: 원)

가구원 수	소득기준(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5,530,000	197,299	157,523	200,343
3인	7,096,000	255,791	229,312	261,015
4인	8,642,000	309,670	293,801	320,126
5인	10,130,000	359,887	354,030	379,133
6인	11,565,000	434,962	436,179	476,875
7인	12,973,000	476,875	481,248	521,613
8인	14,380,000	521,613	527,523	563,270
9인	15,787,000	563,270	570,140	625,329
10인	17,194,000	625,329	628,210	729,187

※ 유의 사항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납부액 산정에서 제외

❍ 혼합 : 부 또는 모 중 1인은 직장가입자, 다른 1인은 지역가입자의 경우

❍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학생과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부·모 및 2촌 이내의 형제·자매
(부모가 모두 없는 경우에 한해 조부·모 포함, 조부.모 없는 경우 외조부.모 포함)

❍ 휴직 등의 사유로 일정기간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 보험료 유예기간을 제외하고 휴직 전후 보험료 납입 기준을 적용하되 최근 납부기준으로 함.

❍ 적용 기간 중 보험료 정산 후 환급을 받거나 더 많이 낸 경우
: 보험료 정산 금액까지 포함해서 평균액을 적용

부록 3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확인 증빙 서류

지원 유형	구 분	제 출 서 류	발 급 처
공 통		·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등본상 부.모 중 한명만 있을 경우 그 부모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반드시 제출)	동주민센터
국가보훈 대상자 전형	교육지원 대상자	· 국가보훈처에서 교육지원대상자로 지정하여 통보된 자는 추가 제출 서류 없음 ·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통보 이후 지정된 경우)	관할 보훈지청
	기타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대상자 확인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수급자증명서	구청, 동주민센터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증명서	구청, 동주민센터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구, 차상위 계층)	교육급여수급자	· 교육급여수급자 증명서	학교, 교육청, 동주민센터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구, 차차상위 계층)	교육비지원대상자	· 교육비지원 확인서	학교
학교장 추천	·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내역서(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 채권압류통지서, 법원 파산결정문 사본, 폐업확인서, 건강보험료 영수증, 급여명세서, 병원 진단서, 장애인 등록증, 근로소득원천 징수영수증 등 · 부모의 사망, 이혼, 별거, 가출, 연락 두절 기타 가정형편으로 부모의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학교장 추천서」 또는 「자기확인서」에 동 사실을 명기 · **어느 한 가지 서류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출 받아 종합적으로 신중하게 판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지사) 관련 기관 등
2순위 - 3순위	사회다양성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 자료 (최근 10개월 평균 납부액) (영수증, 고지서, 납부확인서 중 택 1)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부,모 모두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부, 모 각각 위의 서류 모두를 발급 받아 제출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지사) 확인서발급-방문, 온라인,팩스 등

부록 4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순위별 증빙 서류

지원 유형	구 분	제 출 서 류	발 급 처
1순위·2순위·3순위 공통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부 또는 모 기준) - 각 1부 (최근 7일 이내 발급) - 주민등록등본상 부.모 중 한 명만 있을 경우 그 부모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 2024학년도 자기주도학습전형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학교장 및 학부모 확인서 - 서류 미비시 접수 불가	동주민센터 및 소속중학교
2순위 ~ 3순위 공통	지역 건강 보험료	. 건강보험자격 확인서 1부 . 건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 1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2023년 2월~11월, 최근 10개월 평균 납부액) ※ 부,모 모두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부, 모 각각 위의 서류 모두를 발급 받아 제출	국민건강 보험공단 (관할지사)
	직장 건강 보험료		
	혼합 (지역과 직장으로 부모의 건강보험이 다른 경우)		
※ 증빙서류는 제출일로부터 7일이내 발급한 서류여야 함(별도의 유효기간이 설정된 서류는 제외)			
1순위 기본 제출 서류			
국가보훈 대상자 전형	교육지원 대상자	. 국가보훈처에서 교육지원대상자로 지정하여 통보된 자는 추가 제출 서류 없음 (도교육청 공문으로 명단 확인) .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통보 이후 지정된 경우)	관할 보훈지청
	기타 국가보훈 대상자	. 국가보훈대상자 확인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수급자증명서	구청, 동주민센터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증명서	구청, 동주민센터
기준중위소득 50%이하 . 기준중위소득 60%이하	교육급여수급자	. 교육급여수급자 증명서	학교, 교육청 동주민센터
	교육비지원대상자	. 교육비지원 확인서	학교

학교장 추천	. 객관적 증빙서류 1부 -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내역서(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 채권압류통지서, 법원 파산결정문 사본, 폐업확인서, 건강보험료 영수증, 급여명세서, 병원 진단서, 장애인 등록증,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 - 부모의 사망, 이혼, 별거, 가출, 연락두절 기타 가정형편으로 부모의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학교장 추천서」 또는 「자기확인서」에 동의 사실을 명기 **※ 어느 한 가지 서류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종합적으로 판단** . 학교장 추천위원회 회의록 사본 1부 (학교장 추천위원회 구성 : 학교장, 교원, 학교운영위원 등 7~9명으로 구성)	국민건강 보험공단 (관할지사) 세무서 등

2순위 기본 제출 서류	
소년 . 소녀 가장 조손가정 학생	- 공통서류 (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관계(부 또는 모 기준)증명서 1부.)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결정통지서 또는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1부 (자치단체장 또는 통일부장관 발행) -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1부
순직군경 · 순직소방대원 · 순직교원 자녀	- 순직확인서(관련 사실 확인서) 1부
다문화가정 자녀	- 국적취득증명서(국적 취득시) 또는 여권사본(국적 미취득시) 1부 - 외국인 등록증 또는 외국인 등록 증명서 1부 (부 또는 모, 해당자에 한 함) - 혼인관계증명서 1부 - 기본증명서 (친부 또는 친모 중 결혼 전 외국 국적자) 1부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 위탁가정 및 아동보육시설 재원증명서 1부 또는 사실관계 확인서 (아동복지시설장 날인) 1부
3순위 기본 제출 서류	
농어촌 면단위 소재지 중학교 졸업예정자	- 중학교 소재 상세주소(면단위) 및 1학년 3월 입학일부터 접수일 현재까지 기간이 명시된 재학증명서 1부
다자녀 가정 (첫째자녀부터 가능)	- 공통서류
준사관/부사관 자녀	- 해당 기관 복무확인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총 재직기간 명시)
도서벽지 중학교 졸업예정자	- 중학교 세부주소와 재학기간이 명시된 재학증명서 1부 (2023년 2월 28일 이전부터 재학중인자)
산업재해근로자 자녀	- 재해등급확인서 1부 - (아니면) 유족급여지급확인서 또는 산업재해 사망증빙서류 또는 상병 보상연금 수급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한부모 자녀(비경제적)	- 혼인관계증명서 1부